4. 금융투자협회 규정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투자광고 사전심사 대상 추가 및 자체점검 의무 부과)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 마련)
다.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(협회 투자광고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광고위원회 설치 · 운영)
라.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(투자광고 사후 관리 및 온라인 채널 운영자 투자광고 규율 강화)
마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(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시 CCO 역할 강화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6/10/15 개정 · 2027/1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· 상품 다양화,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—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'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'를 추진

•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(금감원·협회 보도자료, 2026.9.1)

2) 주요 내용

□ 준법감시인 사전승인만으로 실시 가능한 투자광고 중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광고에 대해 협회 사전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근거 마련(제2-42조)

—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온라인 채널(MTS, 홈페이지 등)에서 진행하는 광고 중 추가되는 협회 사전심사 대상은 시행세칙으로 위임하여 자율규제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

— 협회 심사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한을 현행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연장

□ 온라인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 부과(제2-42조의2 제2항)

— 현재 금투회사는 영업점에서의 투자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정성 점검 실시

• 금융투자회사는 점검인력, 투자광고물 파급력 및 광고건수 등을 감안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온라인 투자광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허위 · 과장광고 대응 강화를 위해 상시 신고체계 구축(제2-42조의2 제4항)

—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협회의 '허위 · 과장광고 신고센터'의 설치 · 운영을 의무화

나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6/10/15 개정 · 2027/1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· 상품 다양화,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—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'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'를 추진

•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(금감원·협회 보도자료, 2026.9.1)

2) 주요 내용

□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투자광고(제3조)

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자체 채널(유튜브 등) 내 일부 동영상 광고를 협회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(단, 실시간 진행 광고는 제외)

— 신규 상장 ETF(상장 후 1개월 이내) 및 고위험상품(장내파생 · ELW) 관련 동영상 광고 등

다.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(2026/10/15 개정 · 2027/1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· 상품 다양화,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—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'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'를 추진

•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(금감원·협회 보도자료, 2026.9.1)

2) 주요 내용

□ 협회 투자광고 심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'광고위원회' 설치 · 운영

— (구성)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언론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협회 · 업계 · 소비자 ·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위원장이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 · 구성

— (역할) 협회의 광고 심사 정책 등 주요사항 및 자율규제위원회 ·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등 결의

— 투자광고 관련 제재금 부과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, 위규 · 부당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

• 사회적 물의 야기, 중대, 경미, 단순 위규행위로 판단기준 구체화

라.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6/10/15 개정 · 2027/1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· 상품 다양화,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—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'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'를 추진

•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(금감원·협회 보도자료, 2026.9.1)

2) 주요 내용

□ 투자광고 사후 관리(제46조 제4항 신설)

— 투자광고 시행 후 실제 광고물과 사전 심사를 받은 광고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

□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투자광고 규율 강화(제46조 제4항 신설)

— 유튜브,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계약 등에 따라 투자광고를 제작 · 게시 또는 배포하는 자(온라인 채널 운영자)를 활용한 투자광고의 관리 · 감독 사항

• 광고안, 게시매체·기간 등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사전 확인

• 온라인 채널 운영자에 대한 투자광고 관련 준수사항의 전달 및 그 준수 여부 확인

• 광고안, 심사자료, 게시화면 및 점검결과의 보관 및 관리

□ 대외제공 정보의 정보의 투자광고 해당여부 사전 검토(제90조)

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대외적으로 정보 제공 시 매매 유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광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

마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6/10/15 개정 · 2027/1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투자업권의 업무 · 상품 다양화, 투자광고 증가 및 투자자 저변 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투자광고 심사 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

— 금융감독원은 광고 내부통제 및 협회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'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 TF'를 추진

•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 설명회 개최(금감원·협회 보도자료, 2026.9.1)

2) 주요 내용

□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시 CCO 역할 강화(제23조)

— 광고 의사결정의 객관성 ·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책임자(CCO) 등이 광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— 회사는 광고 관련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